

스타트업 계약서 Kit(V.2.0)

# 주주간계약서

## 안내사항

- 본 계약서 양식의 개별 조항 및 안내글은 사용자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본 계약서(안)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와 모두싸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종 계약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주간계약서 소개

주주간계약서는 기업 설립 시 또는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서 주주(공동창업자) 간 견업, 주식의 처분, 근속의무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본 계약서는 2명의 주주(공동창업자)가 서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주 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며 미연에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고 회사의 공동창업자로서 일정 기간 회사에 근속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계약서 활용 시 주주의 수, 각 주주의 지분비율과 그에 따른 차등적인 의무부담 등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수정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주의사항

### 1. 계약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세요.

계약서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계약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나눠보세요.

### 2.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본 계약서 및 해설서는 기업의 규모, 업종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른 불특정 다수의 기업(또는 개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계약서를 표준화하였습니다. 본 계약서와 해설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 3. 표준적인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준적 형태의 계약서는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조항은 사용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서(안)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와 모두싸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세요.

최종계약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용자에게 필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기존주주

주요주주

대상회사

2000. 00. 00.

---

## 주주간계약서

주주 000, 000(이하 개별적으로 또는 총칭하여 “주주”라 한다)는 주식회사 000(이하 “회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주주간 계약은 회사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주주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겸업의 금지

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 또는 제3자와 동업으로 경영하거나, 타인의 동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또는 동종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등 동종의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체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설]

주주들이 공동창업자로서 회사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이직이나 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주주들이 다른 사업이나 직업을 영위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나열한 주주의 업무에 대해서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주주 000가 0000.00.00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000에서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 주주 000가 0000.00.00 부터 재직하고 있는 회사인 000에서의 개발팀장으로서의 업무>

### 제3조 주식의 처분 제한

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 일체를 행할 수 없다.

#### [해설]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주주 구성이 예상과 달라져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초기 기업에서 대부분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주식 처분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주주간에 소정기간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그 약정을 어기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 자체가 무효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9.26 판결, 99다48429)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주식의 양도 자체는 유효하여 양수인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양도자의 계약위반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2008.7.10. 판결, 2007다14193)

따라서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제3조의 내용에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한다고 해도 주식을 양수한 제3자는 정당한 주주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주식을 양도한 자는 본 계약을 위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본 조항에는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도 있고, 본 조항 위반 시 위약벌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주식의 처분 제한 규정을 강화 또는 약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주가 주식의 처분을 허락할 경우에도, 그 허락한 주주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또는 공동매도권 (Tag-along Right)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주식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3조를 변경하면 됩니다.

<주주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 년간 회사의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 일체를 행할 수 없다.>

또한 위약벌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3조를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위약벌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법원에 의하여 해당 위약벌 조항이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 일체를 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주가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금 일천만원 (10,000,000원)의 위약벌을 다른 주주에게 지급한다.>

#### 제4조 근속 의무

- (1) 주주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재직하여야 한다.
- (2) 주주가 위 기간 내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전량을 액면가로 매도하여야 한다.

##### [해설]

주주들이 회사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주주가 자의 또는 타의로 회사에서 물러나는 경우,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퇴직하지 않도록 퇴직 시 주식을 액면가로 반환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의 주식 반환 시,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다른 모든 주주에게 주식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4조 제2항의 주식의 반환은 본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모든 주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반환해야 할 주식이 줄어드는 조건(이른바 Vesting Schedule)을 본 항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제5조 중도 해지

- (1) 주주는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2) 주주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타 주주는 2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주주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주주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본 계약 해지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주식을 포함한다)를 포기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타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격은 액면가로 한다.

#### [해설]

본 계약의 해지는 주주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약의 체결 목적은 주주 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는 것인바,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주주는 본 계약 해지 시 자신이 보유 하던 지분을 다른 주주에게 모두 반환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6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주주 전원의 서면 합의로만 변경될 수 있다.

### 제7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존속한다.

- (1) 주주간에 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 (2) 회사가 해산, 청산을 거치는 등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

### 제8조 완전 합의

본 계약은 주주간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 구두 또는 서면의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약속, 조건 또는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이전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

### 제9조 비밀 유지 의무

주주는 타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 본 계약에 따른 거래 및 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설]

본 계약의 내용은 물론, 본 계약의 존재 역시 비밀 유지 사항에 포함됩니다.

### 제10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금지

주주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본인의 권리, 의무,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양도, 이전할 수 없다.

### 제11조 불가항력

주주는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본 계약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2조 관할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되고,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 [해설]

분쟁발생 시, 소송이 제기될 법원을 미리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중1인의 주소가 위치한 곳의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

[이하, 서명 날인을 위한 여백입니다]



당사자들은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첫머리에 기재된 일자에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00. 00. 00.

000 (주민등록번호) (인)

주소 ■■■

000 (주민등록번호) (인)

주소 ■■■